

# 아동학대로 인한 가출·비행 청소년의 현상과 경찰의 조력 방안

The Maltreated Runaway-Juvenile Delinquent Situation and the Police Assistance Policy

박은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Eun-Min Park(roseeunmin@yahoo.co.kr)

## 요약

아동 학대는 청소년 가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범죄행위와 비행 발생 요인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심각하게 대두되는 사회문제는 학대받은 아동이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행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학대가 가져올 사회문제의 장기적인 측면은 폭력의 사회화로 인한 폭력대물림 현상이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및 아동학대의 영향을 살펴본 후, 가출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는 가출 청소년이 비가출 일반청소년에 비해 부모 학대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이 학대 피해 아동들을 조력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 중심어 : | 아동학대 | 가출 청소년 | 비행 청소년 | 경찰역할 |

## Abstract

Child abuse is becoming the cause of runaway young people and is related with the criminal act and the misconduct occurrence. Seriously, the social problem which raises is that the abused child has become the adult, again the children of oneself will abuse again. On the based of the research, this study reviewed the concept of the child abused, the type of the child abused, the theoretical approach of the runaway and juvenile delinquent. The runaway youth compare to the general youth that the abused child was significant  $p<.05$ . Base on the data the police officer reviewed the assistance for the abused child.

■ keyword : | Child Abused | Youth Runaway | Juvenile Delinquent | Police Role |

## I. 서 론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사고에서 하나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자녀관의 획기적인 변화가 20세기에 들어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자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자녀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전까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개인 가정사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개입하는 것이 주저되었다.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 자주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책마련에 대한 각계

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00년 7월 31일에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의 피해 정도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의 아동 학대가 직접적으로 아동 행동 발달에 손상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는 아동 행동 발달과 적응을 방해하고 스트레스 환경에 놓여있게 하는 사람을 조장한다. 폭력을 행사하는 아동학대의 영향이 장단기로 아동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론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 학대는 청소년 가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1], 범죄행위와 비행 발생 요인임을 보고[2]하고 있어서 청소년 문제와 관련성이 높다. Reid, Taplin, & Lorber(1981)이 보고한 관찰 연구는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아동과 학대 받지 않은 아동을 비교한 결과 학대받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높은 수준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문제 행동을 많이 보였음을 보고하고 있다[3]. 또한 심각하게 대두되는 사회문제는 학대 아동의 비행 청소년화 현상이다. 학대받은 아동이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행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4]. 청소년 비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소년 범죄자 중에서 약 43%가 성인 범죄자로 전이된다는 허은도(1995)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 범죄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5].

가출이나 비행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들보다 10 배 이상이나 정서적 학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이와 같이 아동발달에 대한 아동학대 영향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학대가 가져올 사회문제의 장기적인 측면은 폭력의 사회화로 인한 폭력대물림 현상이다. 즉, 아동기 학대경험이 있는 아동은 성인이 된 후 다시 자신의 자녀나 가족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7]. 그러므로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경찰의 활동 및 개입을 통해 학대 아동을 도울 수 있는 체계 및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영향, 아동학대의 이론적 접근을 살펴보고, 일반청소년과 가출청소년의 학대정도를 비교분석한 후 경찰의 개입

및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자 한다.

## II. 아동학대 이론

### 1. 아동학대 개념

국외에서는 1950년대 이후 Kemp가 ‘피학대 아동 증후군(The battered child syndrome)’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아동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사회문제로 제기한 이후,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8].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 조항을 살펴보면, 2000년 1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기존의 법에서 2개의 조항에 불과하던 아동학대 관련조항이 11개 조항에 걸쳐 증·개설되었다. 아동복지법 제 2조(용어의 정리) 제 4호에서 아동학대의 정의는 “아동학대란 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신체 학대뿐만 아니라 유기와 방임까지도 아동학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 29조 제 1호에서 4호까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함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 조항에 포함시켜 일반적인 네 가지 아동학대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9].

### 2.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분류되어 정의된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란 구타와 동일 개념으로 심한 신체적 상해를 주는 것을 의미하며 뺨을 때리거나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행위부터 칼로 찌르는 행위까지 다양하다. 신체적 학대는 훈육으로 시작

한 체벌이 자녀의 반응에 따라 학대로 변할 수 있는 등, 훈육의 한 종류인 체벌과 학대 간에 분명한 구분이 어렵다. 그러나 부모가 의도한 효과를 위한 훈육이 받아들이는 자녀 편에 대해 부모의 의도이상으로 영향을 미칠 때 신체적 학대라고 볼 수 있다[10].

둘째,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는 아동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손상을 가하지 않지만 모욕적이고 거부적으로 대하는 비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가져오고 정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위협적인 말이나 욕 등의 언어적인 학대를 말한다. 또한 부모의 편애로 인한 차별을 받거나 부모의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정서적 학대에 속한다. 이는 부모나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 아동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언어적 또는 정서적으로 공격하거나 공격의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흔히 다른 학대에 동반되어 나타난다.

셋째, 성적 학대(sexual abuse)는 자녀에 대한 성적 폭력을 말하는데, 노출에서부터 근친상간,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넷째, 방임(neglect)은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방치하거나, 아동에게 의식주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고, 건강관리 소홀 등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으며 비행방조 및 애정소홀 등 무관심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가정 학대 행위는 자녀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을 위협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녀학대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학대유형 분류기준에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 발생률 84.7%, 체벌 발생률은 74.6% 등 자녀의 50%이상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 자녀학대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11].

### 3. 아동학대의 영향

#### 1) 가출

가출한 청소년들은 전형적으로 자신들의 가정은 역

기능적이고 신체적,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보고하며, 심각한 비율의 신체적, 성적 학대도 보고했다. Slesnick, Bartle-Haring과 Gangamma(2006)은 가족 구성원의 갈등과 빈번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가족폭력 때문에 청소년이 집을 떠난다고 보고하였으며[12][13], 신체적 학대 때문에 가출하는 청소년은 16%에서 40%였으며, 성적 학대로 가출한다고 호소한 청소년도 21%에서 60%였다. Kurtz, Kurtz, Jarvis(1991)는 8개 주에서 가출한 2,019명의 청소년들을 조사한 결과, 가출한 청소년들의 28%가 성적,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음을 발견하였다[14]. Whitbeck, Hoyt과 Ackley(1997)는 경미한 정도(80%)에서 구타(48%)까지를 보고하였으며, 여성 청소년들의 37%가 성인 양육자에 의해서 성적인 학대를 당했음을 보고하였다[15]. 이와 같이 가정 내 자녀 학대가 가출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 2) 비행

현행 우리나라의 법제도에서 청소년 비행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소년과 관련된 현행법 중 '소년법'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20세 미만의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범죄행위란 만 14세 이상 만 20세 미만 소년의 형벌법령에 의해 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벌법규를 위반하였으나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즉 범죄행위와 촉법행위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게 법규를 위반한 행위이다. 우범행위는 만 12세 이상 만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은 성격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고, 범죄성을 지닌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 자체가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지칭한다[16].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는 그 동안 개인, 가정, 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 가운데에서 가정을 가장 중요한 비행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17]. 가정은 한 인간이 부모나 주 양육자를 통해서 그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을 내면화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

장하도록 하는, 즉 최초로 사회화를 습득하는 곳이다. 가정을 비행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는 입장은 가정의 사회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비행이 나타난다고 본다.

최근 Pears와 Capaldi(2001)는 심각하게 학대를 받은 아이는 청소년 시기에 반사회적이 될 가능성이 많으며, 성인일 경우는 공격과 폭력적일 가능성이 많다는 결론으로 아동 학대에 관한 증거를 제안하였다[18]. 아동학대와 공격적인 반사회적 행동 사이의 관련성은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메사츄 보호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40년 종단 연구를 한 McCord(1983) 연구는 학대받은 아이와 범죄적 행동 사이에 관련성을 지지한다는 증거를 제공하였다[19]. Lew와 Bert(2001)도 켈리포니아 보호 관찰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20].

Miller와 Knutson(1997)의 연구는 보호 시설에 감금된 318명의 아동기 경험을 자기 보고식으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 결과 공격성과 폭력성 행동을 하도록 하는 역할은 아동기 동안의 심각한 폭력 경험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보호 관찰소에 있는 아이들의 신체적 학대 수준은 일반 청소년들이 보고하는 것보다 두 배 정도였다[21]. 가장 중요한 것은, 학대 받은 아이들은 높은 수준의 학대로 인하여 폭력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Miller 등 (1997)은 아동기 신체적 학대가 폭력성과 공격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21][22].

#### 4. 아동학대의 이론적 접근

##### 1.1 사회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은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관찰하고 모방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초기 아동기부터 경험된 학대는 모방을 통해서 강화된다고 설명한다. 인간이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습한 결과물로 간주하는 사회학습이론은 청소년의 비행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회학습이론은 청소년이 폭력적인 가정으로부터 공격적인 전략을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왔다. Renner와

Slack(2006)의 연구결과 아동기 때의 가정 폭력 경험은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의 아동에게 학대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23]. 이와 같이 사회학습이론은 관찰된 폭력행동과 결과적 행동의 인관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다.

##### 1.2 외상이론

사회학습이론은 아동이 폭력을 학습한 후 적절한 개입 없이 자라면 폭력 행동을 나타낸다고 예전하는 반면에, 이 이론은 가정 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복잡한 외상적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어 한 가지 장애보다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복합적 증상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 Vissing, Murray,Richard와 John(1991)은 부모의 거부, 언어적 공격, 신체적 위협에 대한 위협과 같은 형태의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비행행위 참여수준이 높다고 하였다[24]. 육체적으로 학대받은 청소년들은 우울, 자살, 알콜 의존형 학대, 신체적 폭력 및 성장 후 아내를 학대할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25]. Gill, Pierce와 O'Carroll(2004)의 연구도 육체적으로 학대받은 청소년들은 흡연, 약물복용, 무기휴대, 난잡한 성행 위들과 같은 행동을 할 우려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6]. 어린 시절의 폭력 경험은 청소년 비행의 주요한 촉매제가 되는 병식력을 갖는데 기여하였다.

무의식적인 분노와 두려움은 이러한 아이들을 만성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신뢰감이 없게 만든다. 특히 이런 사람들 중 남자는 자신을 공격자로 여겨 스스로를 보호하고 편집증을 가지게 되거나 폭력적인 청소년이 되며 성인이 되어서는 알코올, 약물 중독으로 인한 자기학대에 빠지거나 자녀를 학대하게 된다. 특히 학대받은 여성이나 소녀들은 자기혐오(self-hatred)로 바뀐다. 그들은 또한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어 수동적이고 자기파괴적으로 변한다.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져도 그들은 공허감과 무가치감을 느낀다. 그들은 친밀한 가족관계내의 공격자에게로 의존적으로 매달리거나 철회하는,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

##### 1.3 관계이론

자녀의 피학대 경험은 타인에 대해 안정되고 유연한

관계에 대한 기대를 빨달시키는데 치명적인 상처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폭력의 세대간 전수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hild abuse) 는 수십 년 동안 전문적으로 조사되어 온 결과 학대받은 아동은 학대받지 않은 아동보다 부모가 되었을 때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18].

Knutson(1995)은 심각한 학대를 받은 자녀는 청소년 시기에 반사회적이 될 가능성이 많으며, 성인으로 경우는 공격과 폭력적일 가능성이 많다는 결론으로 아동 학대에 관한 증거를 제안하였다[27]. 또한 부모가 악물 (예, 음주나 마약)을 사용하거나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정폭력과 자녀학대 또한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청소년 85명과 쉼터에 거주하는 가출 청소년들 8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학대척도는 다음과 같다. 자녀의 학대 경험은 Straus(1979)가 제작한 CTS(Conflict Tactics Scale)척도를 우리 문화에 맞도록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TS척도는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학대 받은 경험을

표 1. 가출여부에 따른 부모학대 차이

종속변수	변수	평균		t값
		독립변수	표준편차	
부학대	가출 무경험 집단	2.92	.93	3.82 *
	가출 경험 집단	3.49	.68	
부방임	가출 무경험 집단	3.03	.79	4.71*
	가출 경험 집단	3.57	.44	
모학대	가출 무경험 집단	3.22	.86	2.45*
	가출 경험 집단	3.58	.72	
모방임	가출 무경험 집단	3.20	.13	2.32 *
	가출 경험 집단	3.55	.08	

\* $p<.05$

질문하는 총 13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신체적 학대 7문항, 정서적 학대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방임은 아동학대국제상임위원회(ISCCA:International Standing Committee on Child Abuse)가 제시한 기준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한 황영희(1987)의 척도와 고성혜(1992)가 제작한 척도를 참고로 하여 구성한 홍은주(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은 12문항이며 5점 척도이다 [28].

### 3. 자료분석

가출여부에 따른 부모학대 정도를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PSS 12.0을 사용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가출 여부에 따라 부모학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가출 여부에 따른 부모학대 수준은 유의수준  $p<.05$ 에서 아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출 경험 집단의 부모학대 평균, 부모방임 평균이 가출 무경험집단의 부모학대 평균, 부모방임 평균보다 의미 있게 높았다. 즉 가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가출 무경험 집단에 비해 부모학대 정도가 아주 유의미하게 높다고 말할 수 있다

### IV. 아동학대에 관한 경찰의 개입

#### 1. 경찰의 역할

가정학대로 인한 괴학대아동이 성장하는 동안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잠재된 비행 청소년이 실질적인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아동 학대 예방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체포권이나 법적인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이러한 기관에 신고를 하여도 아동은 학대자로부터 격리되지 못하고 가정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관과의 연계로 피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경찰은 장기적인 운영설계의 미흡으로 갈수록 저연령화, 폭력화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 비행을 사전예방하지 못한 채, 단속과 실태조사에만 국한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행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다.

학대아동의 보호와 관련한 아동학대 인식조사 결과, 학대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 및 위탁가정의 육성 등 전반적인 지원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9]. 관련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경찰의 대응 방안

### 2.1 수사경력이 풍부한 여성경찰관 배치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관서에서는 가정폭력을

비롯해 여성에 대한 범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17일 경찰청 방법국에 여성청소년기획계, 여성계, 청소년계 등 3개의 계로 구성된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였으며 운영하고 있다. 여성청소년계는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그래서 수사경력이 풍부한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여자 경찰이 없는 지역이 많거나 아직 수사에 정통한 여성 경찰관이 부족하고 여성청소년계의 사무실 등이 정비되지 않은 채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 많다.

### 2) 전문적인 교육 요구

경찰관 교육을 위한 경찰신입과정(6개월)과 전문과정에 아동학대에 관련된 가정폭력피해자학, 피해자의 심리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 경찰이면 누구나 아동학대와 가정학대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성청소년계에 배치된 경찰관은 피학대 아동들의 위축감을 감소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돋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아동학대의 특성, 학대의 역동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서적 특성 등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효과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 또한 첫 대면에서 피학대 아동을 면접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어떻게 면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표 2. 여성청소년계 운영 실태 및 현황

	부서별	담당업무
본청	여성청소년 기획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의 여성정책, 여성공무원 권리향상</li> <li>·가정폭력아동학대 주요정책 기획 및 수사지도</li> <li>·여성아동청소년 치안대책 홍보</li> </ul>
	여성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성매매 관련 업무</li> <li>·진술녹화 관련 업무</li> <li>·여경기동수사대 운영</li> </ul>
	117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성매매 신고접수 사건 수사지휘 및 사건처리</li> </ul>
	청소년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li> <li>·소년범죄 수사 기획지도</li> <li>·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지도</li> <li>·아동정책</li> </ul>
지방청	182미아찾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아가출인 등 신고 접수 및 처리</li> <li>·DNA활용 미아찾기 업무</li> <li>·미아찾기센터 홈페이지 운영</li> </ul>
	여성청소년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청 3개係 업무 지방청 단위 수행</li> </ul>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경기동수사반</li> <li>·성매매수사전담반</li> <li>·장기미아주적전담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청 3개係 업무 경찰서 단위 수행</li> </ul>

필요하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피학대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을 통해 피학대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과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 3) 전문기관과의 활발한 연계성

아동학대나 가정학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간기관에 신고하며, 처벌을 요구할 경우 경찰에 신고 되기도 한다. 그러나 민간기관은 조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현장조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관의 현장 조사 요청시 경찰이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며 전문기관과의 활발한 연계를 한다면 사건이 좀 더 원만히 해결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조사에서 상처를 다시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은 전문기관과의 활발한 연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 경찰 활동의 홍보

경찰은 청소년들의 고민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면접이나 전화상담을 통하여 문제의 사전진단과 해결을 위해 전국 경찰관서 및 청소년 선도단체에 '청소년 고충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경찰백서, 2003). 이러한 경찰의 청소년 선도활동의 강화는 그동안 경찰의 청소년대책이 단속위주에만 국한되었던 한계에서 발전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Community Policing Program)의 일환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좋은 활동임에도 홍보가 많이 되지 않는다면 활동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30].

학대란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된 매우 왜곡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기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부당한 대우이며 부적절한 발달 환경이다. 가정의 일차적 관계를 통해 인간은 기본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학대는 이런 기본적 사고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는 자녀들은 가족 내 불화나 폭력을 늘 겪으며 양육자가 주로 사용하는 훈육이 신체적 처벌이었기 때문에 아동들이 폭력을 성취의 방법으로 학습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청소년 비행의 원인 중 아동학대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일반적 합의를 노출했다.

부모에 의해 아동에게 행해지는 신체적 학대는 청소년기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Thomson & Braten-Antrim, 1998), 가출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 부모의 학대와 가정폭력이라는 사실을 통해 아동학대의 잠재위험성에 대해 살펴보았다[31].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 유형, 아동학대의 영향으로 가출과 비행과 이론적 접근을 살펴본 후, 가출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교를 통해 아동학대의 유의미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관이 학대 피해 아동들을 조력하기 위한 대응책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수사경력이 풍부한 여성경찰관 배치, 둘째, 전문적인 교육 요구, 셋째, 전문기관과의 활발한 연계성, 넷째, 경찰 활동의 홍보를 제시하였다. 근무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은 많은 업무로 자기계발의 시간이나 투자가 쉽지 않지만, 학대받은 아동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실천가능 한 부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표 3. 청소년 고충 상담실 및 사랑의 교실 운영실적

(단위: 회, 건)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고충상담실	15,042회	15,989회	18,827회	14,514회	13,787회
사랑의 교실	289회 (9,042명)	197회 (9,860명)	287회 (9,598명)	231회 (7,557명)	272회 (72,490명)

## 참 고 문 헌

- [1] 나 철, 가출 청소년의 가족 문제 및 선도 방안. 한국청소년연구원 보고서, 1992.
- [2] 최규련. “가족학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제와 대책”,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제1호, pp.147-160, 1996.
- [3] J. B. Reid, P. S. Taplin, and R. Lorber, *A social interaction approach to the treatment of abusive families*, In R. Struart(Ed.).*Violent behavior : Social learning approaches to prediction, management, and treatment*. New York: Brunner/Mazel, 1981.
- [4] M. T. Zingraf, J. Leiter, K. A. Myers, and M. C. Johnsen, “Child maltreatment and youthful problem behavior,” *Criminology*, Vol.31, No.2, pp.173-202, 1993.
- [5] 허은도,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6] 허남순,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아동복지학, 창간호, pp.23-45, 1993.
- [7] J. G. Kaufman and C. S. Widom, “Childhood victimization, running away,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 Delinquency*, Vol.36, pp.347-370, 1999.
- [8] 김재엽, “한국 가정의 미성년 자녀 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6권, pp.41-64, 1998.
- [9] 이호균, *아동보호체계의 이해*. 아동학대전문상담 원과정. 국립보건원 보건복지연수부, 2000.
- [10] 주영희, “가출아동을 통한 학대조사 연구”, 사회복지, 제80권, pp.71-133, 1984.
- [11] 경기개발연구원,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1.
- [12] N. Slesnick, S. Bartle-Haring, and R. Gangamma, “Predictors of substance use and family therapy outcome among psychically and sexually abused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Vol.32, No.3, pp.261-281, 2006.
- [13] K. A. Tyler, D. R. Hoyat, and B. Whitebeck, “The effects of early sexual abuse on later sexual victimization among female homeless and runaway youth,”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15, pp.235-250, 2000.
- [14] P. D. Kurtz, G. L. Kurtz, and S. V. Jarvis, “Problem of maltreated runaway youth,” *Adolescence*, Vol.126, pp.543-555, 1991.
- [15] Whitbeck, Hoyt, and Ackley, “Families of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A comparison of parent/caretaker and adolescent perspectives on parenting, family violence, and adolescent conduct,” *Child Abuse & Neglect*, Vol.21, No.6, pp.517-528, 1997.
- [16]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백서*, 2003.
- [17] 전영실, *피학대아동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18] K. C. Pears and D. M. Capaldi,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buse: a two-generational prospective study of an at-risk sample,” *Child Abuse & Neglect*, Vol.25, No.3, pp.1439-1461, 2001.
- [19] J. McCord, “A forty year perspective on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Vol. 7, No.1, pp.265-270, 1983.
- [20] B. Lew and B. Bert, “Abusive home environments as predictors of poor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29, No.3, pp.195-217, 2001.
- [21] K. S. Miller and J. F. Knutson, “Reports of severe physical punishment and exposure to animal cruelty by inmates convicted of felonies and by university students,” *Child Abuse & Neglect*, Vol.21, No.1, pp.59-82, 1997.
- [22] C. S. Widom, and R. L. Shepard, “Accuracy of

- adult recollections of childhood victimization, "Childhood physical abuse," Psychological Assessment, Vol.8, pp.412-421, 1996.
- [23] L. M. Renner, K. S. Slack,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child maltreatment: Understanding intra-and intergenerational connections," Child Abuse & Neglect, Vol.30, No.6, pp.599-617, 2006.
- [24] Y. M. Vissing, A. S. Murray, J. G. Richard, and W. H. John, "Verbal Aggression by Parents and Psychosocial Problems of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Vol.15, No.1, pp.223-248, 1991.
- [25] F. S. Tanya, S. Suzanne, S. F. Richard, M. Elena, and H. Louis, *Assesment of the effect of physical child abuse within an ecological framework:measurement issue*, Philadelphia, PA, 2001.
- [26] R. Gill and Pierce. O'Carroll, "Cognitive behavioral psychotherapy intervention in childhood sexual abuse: Identifying new directions from the literature," Child Abuse Review, Vol.13, pp.51-64, 2004.
- [27] J. F. Knuts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altreated children:Putative risk factors and consequenc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46, pp.401-431, 1995.
- [28] 홍은주, 아동기 학대 경험과 자아상으로 본 아동의 심리, 사회발달과의 관계, 숙명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29] 박병주, "경찰과 시민의 아동학대 인식도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 연구, 제18호, pp.173-199, 2004.
- [30] 경찰청, 경찰백서, 서울:경찰청, 2003.
- [31] K. M. Thompson and R. Braaten-Antrim, "Youth maltreatment and gang involvem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13, No.3, pp.328-346, 1998.

## 저자소개

박 은 민(Eun-Min Park)

정회원



- 2001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8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숙명여대, 조선대, 동신대 강사

&lt;관심분야&gt; : 아동학대, 비행청소년, 가출